

6. 建設業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第1993-71號 1993. 4. 30

1. 개정이유

건설공사 발주자의 편의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 및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와 건설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도급한도액 적용방법과 하도급대금 적불제를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2,000만원미만에서 3천만원미만, 전문공사인 경우는 공사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미만인 공사로 함.

나. 전문건설업체가 예외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4천만원에서 8천만원미만인 공사로 함.
다. 건물,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은 동일 구조물공사를 2개이상으로 분리하여 동일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그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토록하고, 도급한도액을 공사종류별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규정은 1년간 연기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된 공사중 하도급한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을 기재하는 업무를 건설협회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
조 : 건설경제과장, 전화 500-2903,

29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